

자동차보험 침술 3종 시술 관련 안내

◎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침술 3종 청구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, 자동차보험 침술 3종 시술 심사방안을 알려온 바,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침술 3종 시술 시 인정기준

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,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.
다만,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.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14호, '10. 1. 1. 시행)

* 복합상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A00~Z99)상 대분류(A, B, ... Z)가 다른 상병을 말하나, 손상,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(S~T)는 하나의 대분류군으로 봄

□ 심평원 안내 요청 사항

○ 응급 등 부득이한 경우의 침술 3종 시술 시

- '특정내역란'에 사유 기재

*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: 첨부자료 참조

○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 시

- 진료기록부에 부상병과 관련한 환자증상 및 경과, 시술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작성

- 필요 시 '특정내역란' 활용

※ 침술 3종 시술에 대해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강화 예정

□ 주요 삭감 사례

○ 진료기록부상 부상병에 대한 환자증상 및 경과 등의 기록 미비

○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 또는 기왕증을 부상병으로 코딩하고 침술 3종 시술 및 청구

□ 유의 사항

- 환자의 증상 및 경과에 따라 적절하게 진료하며, 일률적인 침술 3종 시술은 삭감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
- 자동차사고 환자를 면밀히 살펴서 복합상병(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상병)으로 인정받도록 하되, 기왕력과 구분되기 위해 진료내역(특히, 초진의 경우)을 상세히 기재
-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 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

※ 첨부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(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)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별표 1]

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(제2조제1호관련)

1. 응급증상

- 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 의식장애, 급성 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- 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 호흡곤란,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- 다. 중독 및 대사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·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, 급성 대사장애(간부전·신부전·당뇨병 등)
- 라. 외과적 응급증상 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(급성 복막염·장폐색증·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, 광범위한 화상(외부신체 표면적의 18% 이상), 관통상, 개방성·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,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다발성 외상
- 마. 출혈 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- 바. 안과적 응급증상 :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손실
- 사.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- 아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성 장애
- 자.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
2.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- 가. 신경학적 응급증상 : 의식장애, 현훈
- 나. 심혈관계 응급증상 : 호흡곤란, 과호흡
- 다. 외과적 응급증상 : 화상,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·외상 또는 탈골,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- 라. 출혈 : 혈관손상
- 마.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,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·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)
- 바.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: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- 사.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: 귀·눈·코·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